

[규칙명 개정 2006. 7. 4(舊 의과대학 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칙)]

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칙

제정 2001. 9. 1

1차 개정 2006. 7. 4

2차 개정 2013. 2. 25

3차 전면개정 2015. 12. 15

제 1 조(목적) 본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육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교육 시설물(이하 “본 시설물”이라 한다)은 학생의 교육에 사용되는 본 대학 강의실, 세미나실, 실습실, 혁신학습실 및 임상교육센터 등 강의 및 실습 시설물을 말한다.

제 3 조(사용승인 및 사용료) ① 외부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, “별지 1”의 신청서를 사용 3주전에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사용료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.

제 4 조(사용승인의 변경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당초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
2. 예기치 못한 고장,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
3.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제 5 조(변상)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.
② 변상액은 「자산관리규칙」 제35조 제4항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(원상복구) 사용자가 사전승인 없이 가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사용자 준수사항) 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.
2. 본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드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.
3. 본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는 교학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4. 본 대학이 보유한 기자재를 점검하거나 외부에서 반입된 기자재를 설치 할 경우에는 교학팀과 협의하여야 한다.
5. 각종 게시물(포스터, 팜플렛, 안내표시 등)은 교학팀과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보 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